

수입되는 목재·목재제품의 합법벌채
판단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기관명 (부서명)	산림청 (임업수출교역팀)
제출연월일	2024. 1. .

1. 개정이유

수입신고 대상 목재·목재제품이 확대('23.5.16.)되어 상위법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에서 별표로 규정함에 따라 고시에서 규정한 수입신고 대상 목재·목재제품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수입신고 대상 목재·목재제품 삭제(현행 제2조)
- 나. 국가별 PEFC 상호인정 등록 인증제도 현행화(현행 별표)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없음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수입되는 목재·목재제품의 합법벌채 판단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수입되는 목재·목재제품의 합법벌채 판단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4조제1호 중 “시행령”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대상상품의 분류체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의 3에 따른 원목 또는 목재제품의 세계 공용 상품분류체계(Harmonized System Code)는 다음과 같다.	<삭 제>
1. 원목(HS4403)	
2. 제재목(HS4407)	
3. 방부목재(HS4407)	
4. 난연목재(HS4407)	
5. 집성재(HS4407)	
6. 합판(HS4412)	
7. 목재펠릿(HS4401.31)	
제4조(서류제출의 요건) 수입업자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준수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수입업자가 법 제19조의2에 따라 수입 신고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2018년 10월 1일 이전에 선적되	제4조(서류제출의 요건) ----- ----- ----- ----- ----- ----- -----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1. 시행령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원본(복사본을 포함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생략)

-----.

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2. (현행과 같음)

[별표]

국가별 PEFC 상호인정 등록 인증제도

(2023년 11월 기준)

구분	국가	산림인증제도
1	가봉	PAFC Gabon
2	남아프리카	South African Forestry Assurance Scheme (SAFAS)
3	네덜란드	PEFC Netherlands
4	노르웨이	PEFC Norway
5	뉴질랜드	New Zealand Forest Certification Association (NZFCA)
6	덴마크	PEFC Denmark
7	독일	PEFC Germany
8	라트비아	PEFC Latvia
9	루마니아	PEFC Romania
10	룩셈부르크	PEFC Luxembourg
11	말레이시아	Malaysian Timber Certification Council (MTCC)
12	미국	PEFC USA : American Tree Farm System (ATFS) Sustainable Forestry Initiative (SFI)
13	베트남	Vietnamese Academy of Forest Science (VAFS)
14	벨기에	PEFC Belgium
15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Association of Private Forest Owners "Naša Šuma"
16	북마케도니아	The Council for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in the Republic of Macedonia
17	불가리아	Council for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and Certification in Bulgaria
18	브라질	Instituto Pró Manejo Florestal
19	스웨덴	PEFC Sweden
20	스위스	PEFC Switzerland
21	스페인	PEFC Spain
22	슬로바키아	PEFC Slovakia
23	슬로베니아	Institute for Forest Certification
24	아르헨티나	Argentine Forest Certification System (CERFOAR)
25	아일랜드	PEFC Ireland
26	에스토니아	Estonian Forest Certification Council
27	영국	PEFC UK
28	오스트리아	PEFC Austria
29	우루과이	PEFC Uruguay
30	우크라이나	Association National Voluntary Forest Certification System
31	이탈리아	PEFC Italy
32	인도	Network for Certification and Conservation of Forests (NCCF)

33	인도네시아	Indonesian Forestry Certification Cooperation (IFCC)
34	일본	SGEC/PEFC Japan
35	중국	China Forest Certification Council (CFCC)
36	체코	PEFC Czech Republic
37	칠레	PEFC Chile
38	카메룬	Cameroonian Association of the Pan African Forestry Certification
39	캐나다	PEFC Canada Sustainable Forestry Initiative (SFI)
40	콩고공화국	PAFC-Congo
41	태국	The Federation of Thai Industries (F.T.I.)
42	포르투갈	PEFC Portugal
43	폴란드	PEFC Poland
44	프랑스	PEFC France
45	핀란드	PEFC Finland
46	한국	Korea Forestry Promotion Institute (KoFPI)
47	헝가리	Hungarian Forest Certification Non-profit Ltd.
48	호주	Responsible Wood

※ 출처 : www.pefc.org (List of PEFC members : PEFC Factsheet - November 2023)